

예 산 총 칙

2007년도 [제2회 추경예산]

* 제 1 조 : 2007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	회 계 별	세입 · 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	총 계	105,505,853	3,161,000
	일 반 회 계	96,861,340	2,905,000
	특 별 회 계	8,644,513	256,000
	기 타 특 별 회 계	8,644,513	256,000
	의 료 급 여 기 금	286,971	8,000
	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	845,234	25,000
	주 차 장	7,201,166	216,000
	주 거 환 경 개 선 사 업	114,604	3,000
	기 반 시 설	166,538	4,000
	지 하 수 관 리	30,000	-

* 제 2 조 : 2007년도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예산”과 같다.

* 제 3 조 :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“명시이월비조서”와 같다.

* 제 4 조 :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3,101,713천원으로 한다.

* 제 5 조 :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 비목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이용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.

* 제 6 조 : 금회 추경 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·시비보조금, 지방교부세, 특별교부금 등은 예산승인(명시이월포함)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.